국토해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벌점부과 적용기준 개선 알림

1. 국토해양부 '벌점제도 운영요령'(건설안전과-1615, '12.4.5)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만 한정하여 적용·운영하여 왔고, 이에 따라 준공된 건설공사는 부실시공에도 불구하고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3. 이에 2013.1.1부터는 준공된 건설공사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대상으로 운영하오니 귀 협회 회원사에게 널리 알려서 부실공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해양부장관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한국건설감리협회장,한국건설설계협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장

전결 12/06

주무관 **김성재** 시설사무관 **강해덕** 과장 **변재영** 정책관 **이화순**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5307 (2012.12.07.) 접수 건설환경실-999 (2012.12.10.)

우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
전화 044-201-3578 전송 02-502-4754 / k.k.k.k@mltm.go.kr / 비공개(5)